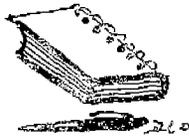


ICN 과 會員資格에 대한

教育的 規準



ICN 의 會員자격으로 종합
적 간호교육이 필요한가?

Yvonne Schroeder Jayawadena

李 松 姬 譯

ICN 의 會員이 되는 데 필요한 특수한 기준에 관한 문제는 매우 까다롭고 논의의 대상이 될만 하다.

이 문제는 1961년에 Melbourne 서 열린 총

회에서 논의되었는데 그것은 ICN 의 會員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의 종합적 기초 간호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였다.

과거에 본인이 ICN 의 간부로 몇년간 일하였으므로 ICN 의 의사의 주도(主潮)에 휩쓸릴 경향이 있긴 하지만 또 본인이 종합적 기초 간호교육의 단연 찬성자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공평하게 이 문제를 관찰하려고 노력해 왔다. 실제로 나는 이 문제를 관계 외인의 처지에서 관찰해 보려하였으며 간호원이 아닌 다른 직업인들과 토론하곤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ICN 이 각국 간호협회의 會員자격을 인정한다면가 또는 會員자격으로부터 제명한다면가 하는 근거로서 교육기준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ICN 은 각국 간호협회의 연합체이지 개개인들의 협회는 아니므로 각회원국에게 웬만한 자율권을 남겨 두어야 한다. ICN 은 다만 직접으로 협회에 관한 기준만을 관여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정관 및 세칙, 정당 가입 여부, 완전한 자율권 nursing government, 간호원 아닌 會員의 부재 등등, 이에

<필자소개> Mrs. Jayawardena (nee Schroeder)는 현재 오스트랄리아의 간호교육과 차장으로 (Director of the National Nursing Education Division) 있으며 이 기사에 표명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위의 간호교육과의 의견은 아니다.

대하여 본인은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기준들이란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간호원”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1961년까지의 ICN의 정관 서언에 다음과 같은 脚註가 있었다. “간호원이란 말은 단지 졸업후 등록 혹은 면허를 필한 전문간호원을 말하며 만일 그가 활동중이면 그가 취업하고 있는 국가, 도, 주에 등록이나 면허를 필한 자라야 하고 미취업 중이면 미취업 기간중이나 퇴직하기 전에 취업하였던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도, 주에 등록이나 면허가 필하여야 한다”

이것은 ICN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서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원”의 아주 적당한 정의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문간호원이란 말이 “자기 나라”에서는 전문간호원으로 인정된 간호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간호원들에게 관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나 정신과 간호원, 소아과 간호원, 혹은 다른 어떤 특수간호원 즉 종합적 간호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원에 관한 말쟁이 일어난다.

이 간호원들을 “전문간호원”이라 할 수 있을까? 내 의견으로는

a) 이 간호원들을 전문간호원으로 인정하거나 제외하거나는 개개 나라의 특권이다.

b) 국가에 따른 체제의 다양이나 국제적 표준에서 있음직한 불일치는 서서히 제거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수 기초과정(basic specialized programs)의 체제등을 포기해 버리도록 장려되기 때문이다.

1959년 Helsinki에서의 ICN 이사회에서 결의가 통과된 이래 예를 들어 정신과간호만을 교육 받은 간호원을 회원으로 인정한 몇 나라 간호협회가 ICN 회원국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간호협회는 일반 간호원으로서 기초교육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만 회비를 내게 되었다.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일정한 그 나라 체제 때문에 특수 기초교육을 받은 간호원은 ICN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결합이 되는 한, 전문직업에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 간호원들은 예를 들어 국제정신과 간호원협회라는 것을 조직할 기회를 갖지 않을 것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이 조직에 대한 활동이 강했던 것 같다.

이러한 경쟁적인 국제기구가 ICN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며 ICN이 훌륭한 사업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 보다 더한 재정이 필요한 때에 이러한 가능성 있는 회원의 회비를 잃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특수 기초과정이 없어지기까지 ICN 내에 예를 들어 종합교육을 받지 못한 정신과 간호원부 종합교육을 받지 못한 스아과 간호원부 등의 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의 설치와 관리는 별 큰 곤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ICN은 국제 사법체가 아니고 또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므로 ICN이 본국에서는 전문 간호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간호원들을 회원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교육방침 (Educational Policy)

교육기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ICN은 뚜렷한 교육 방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ICN은 회원국들이 동의할 바람직한 기준으로서 종합적 교육 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1957년 Rome에서 있었던 ICN Grand Council에서 통과된 다음과 같은 결의와 일치한다.

“총회 (Congress)는 특수 간호교육의 기초로서 광범위한 종합 교육과정의 근본 원리를 인정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나라에 이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이 결의 중에는 각 회원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자기네의 교육방침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없다. “부지런히”란 용어는 각 나라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것이다.

나의 의견으로서는 ICN은 이러한 기준을 강요하려 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새 회원국을 가입시키고 기성 회원국은 그대로 놔 두고 새로운 교육형태로 바꿈에 있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교육 형태를 채택하도록 나라들을 격려하는 것과 몇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를 강요하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 6 가지 (Six Good Reasons)

내 신념에 대한 이유로서,

a) 내 생각에 회원으로부터 排除와 除名の 위험을 가져 올 교육 형태의 강요는 분렬적인 정책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가 간호원들간의 국제 친선을 매우 자랑으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b) 대부분의 경우 기성의 교육 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은 보건부나 문교부 혹은 다른 어떤 법정체, 곧 예를 들면 Nursing council, Registration Board 등에서 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몇몇 고립된 나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간호교육을 직접 그 나라

간호협회에서 관할할 수 없다. 그야 물론 간호협회가 위에 말한 기관이 제정할 간호교육에 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주어야만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간호협회가 너무 미약한 경우가 흔히 있다. 마땅히 이 간호협회들은 그들이 노력함에 있어서 ICN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야 한다.

보사부나 문교부 혹은 다른 법정체의 경우 排除와 除名의 위협이 변경하는데 절대적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위협은 또한 그들이 강요를 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므로 그들의 반항심을 굳게 할 것이다.

c) 만일 교육기준이 강요할 성질의 것이라면 ICN이 또한 nursing service의 기준—병원수, 직원의 설정과 배치, health service의 기준등이나 경제기준—간호와 직원의 급료, 근무조건, 주(혹은 2주)당 근무시간수—등을 강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하고 복잡하고 독재적이 될 것이다.

d) 이것은 또 ICN이 “검열하는” 활동을 하게 할 것이다. 즉 ICN의 직원은 주어진 교육 형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때때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야 할 것이다. 공평하게 하려면 한 나라에서 이러한 교육 형태를 지키고 있음을 지적하는 서신이나 교과정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 국제적 관계에 오해가 생길 것이고 특히 서신 거래에 있어 그러할 것이다.

e) 만일 새 회원국이 제명되어야 한다면 기성 회원 중에서 종합 기준 간호교육 program을 안받은 회원이 제명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ICN의 회원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직업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f) 나는 종합적 기초 간호교육이 간호원을 교육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이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또한 의과교육의 형태를 진밀히 떠론다. 대다수의 간호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1957년 ICN 총회에서 통과된 종합적 간호교육에 관하여 앞서 말한 결의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견해란 시간과 함께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교육 형태라고 오늘 생각한 것이 내일에도 똑같이 가능한 가장 좋은 교육 형태라고 또는 모든 환경에서 다 그러리라는 특별한 보장은 없다. 건설적인 반대는 좋은 일이다. 이것은 우리를 반성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분석하게 하고 우리의 의견을 검토하게 한다. 대중적인 혹은 대다수의 의견에 좌우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요 약 (Summary)

요약하건대 ICN은 종합적 기초 간호교육의 근본원리를 인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ICN의 교육부 간부가 교문과 working party의 도움으로 현재 만든 “기초 간호교육에 대한 국제적 질의”는 국제적인 견해를 근거로 하여 가치있는 결론과 건의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전체의 결말이 회원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ICN의 Grand Council은 이의로 표명된 의견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종합적 기초 간호교육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최후로 Grand Council은 일반 간호원이 아닌 소아과 간호원동과 같은 특수 분야 하나만을 훈련받은 간호원들의 지위를 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전문 간호원”으로 간주된다면 그 간호원들을 전문부(specialized section)에 ICN 회원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ICN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경쟁적인 단체의 형성을 방지할 것이다.

<成功의 秘訣>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쪽으로 가는 점이 있다. 우리 앞에는 불행과 행복의 두가닥 갈림길이 언제나 있다. 우리 자신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 하도록 되어 있다.

(아브라함·링컨)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정신, 즉 마음과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잘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 외부의 사정과 자기의 마음이 분별이 될 적에 사람은 슬퍼지는 것이다.

(새뮤엘·버틀러)